

검 토 보 고 서

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안

양 주 시 의 회

전문위원 김형열

양주시 평생 학습 조례 안

□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

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

□ 본조례 개정 이유는

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
임무가 명시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2010양주비전
의 교육문화 도시로서 평생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

□ 주요 내용은

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

□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

○ 본조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제정된 「평생교육법」
제9조등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.
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와
그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며, 상시 추진기구로 평생학습센터
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의
조례안입니다

-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고, 제10조와 제13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감 소속하에 둔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, 광역자치단체를 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, 해당조항 별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이 필요 합니다
- 본 조례안 제3조 제3 항에서 “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.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”로 되어 있는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의 연계사항을 확인하여, 본조례 운영시에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
- 안 제 4조에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「평생교육법」 제10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, 본조례안에 명시한 조직운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할것입니다
- 안 제13조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평생학습의 실무적인 추진 상시 기관을 설립하는것으로서, 이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. 운영하는데 대하여 업무규정을 세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

「평생교육법」 제13조에서 “평생교육센터”에 관하여 교육감의 관할기관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정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